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996. 4. 19.

교육사회위원회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4월 8일

○ 회부일자 : 1996년 4월 8일

3. 제 안 이 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1995. 12. 30., 대통령령 제 14,877호)의 개정 및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 (1995. 12. 29., 대통령령 제 14,857호)과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 (1995. 6. 10., 대통령령 제 14,662호)으로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4. 주 요 골 자

-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토록 함.
-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함

- 국내 여비규정 및 국외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함.

5. 검토 보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995. 12. 30 대통령령 제 14,877호)의 개정으로 이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규정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 "회의수당을"을 "회의수당(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을"로 하여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며

-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있어

- 제2항을 신설하여, 원격지 회의 출석비는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위원회 사무실 소재로 부터 편도거리 60킬로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며

- 제2항의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대상 지역을 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 조례안 : 별 첨